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6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임이자·김형동·이상휘

이종배 • 우재준 • 김위상

유용원 • 조승환 • 김용태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런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① 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등에 관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을 검・인증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 검·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4항에서 정한 사용목표 비율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제조·수입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기준 및 방법, 사용목표 비율 산정방법, 달성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2(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① 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
	<u>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을 검ㆍ인증할 수
	<u>있다.</u>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 검ㆍ인증을 위하
	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는 자
	는 제4항에서 정한 사용목표 비
	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제조·수입하여야 <u>한</u>
	<u>다.</u>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5
	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
	증 및 사용목표 준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 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①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기준 및 방법, 사용목표 비율 산정방법, 달성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